



무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대 구 고 등 법 원

2022.07.28

제 1 행 정 부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3누575 수당 등

2013누582(병합) 임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상북도

대표자 도지사 이철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정한결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09가합14115, 2010가합11716(병

합) 판결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가. 별지2 '반환금액 및 청구금액 표' 중 '(1) 성명'란 기재 원고들은 2022. 11. 30.까지 피고에게 같은 표 중 '(2)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이 2022. 11. 30.까지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각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가. 피고는 2022. 11. 30.까지 별지2 '반환금액 및 청구금액 표' 중 '(3)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4)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한다.
나. 피고가 2022. 11. 30.까지 위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각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고, 피고는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로부터 같은 항 기재 각 돈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는 향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지 않는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 청구취지

- 1) 피고는 별지3 '청구취지(1)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별지4 '초과근무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 개인별 미지급액(1) 목록'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별지5 '가지급물반환금액표'의 '성명(F열)'란 기재 원고들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같은 표의 '총 차액(R열)'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원인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지만, 피고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6. 11.분부터 2010. 3.분까지(다만 교대점검을 위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2010. 12.분까지, 휴게시간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2012. 9.분까지)의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지급물반환신청원인

피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2. 1. 20. 가지급물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그 인용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인용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휴일병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급 부분 등)는 이유 없으므로 위 가집행선고 중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 고들은 피고에게 일부 가지급물반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7. 22.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원호신



판사

정성욱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